

---

문서번호 : 2019-103-2

수 신 : 강남구청

참 조 : 문화체육과

제 목 : 강남구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에 검토의견

---

귀 구청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의내용

강남구청장이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강남구 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정하에서 그 기한의 연장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단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행정법규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강행법

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 역시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오직 “1년”의 단위로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질의하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1년의 기간으로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위 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기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위 조례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는 입장은 그 조문의 문언상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남구청장에게 연장 여부 자체에 대한 재량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직 1년의 단위로만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9. 11. 25.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최 세 학

